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212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치련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수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0. 접수 제147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6. 2.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인 합필 전 서울 강서구 E 대 108.5㎡ 및 그 지상 벽돌조 스라브 기와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손자인 F에게 유증하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유언’이라 한다), 2019. 10. 25. 이를 자녀인 G에게 유증하고, 그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제2유언’이라 한다).

나. D은 2020. 3.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21. 2. 10. 사망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는 H 대 102.3㎡, I 대 122.4㎡와 합필되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2020. 3. 4. 당시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D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 흠결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의료법인 J병원장, 의료법인 K병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유언은

D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철회되기 전 이미 그와 상충되는 내용의 제2유언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할 것인데, 제2유언 당시 D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부족한 증거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기재, 을 제13호증의 영상, 증인 L, M,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들과의 위 매매계약 및 제2유언 당시 의사를 결정할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별지